

천주교광주대교구 Archdiocese of Gwangju

문서번호 : 천광교-사무처-22-052

시행일자 : 2022. 5. 30.

수 신 : 교구 사제, 선교·수도회

참 조 :

주임신부		사목회장	
보좌신부		분과장	
담당수녀		분과장	
사 무 장		분과장	
접수일자		처리결과	

제 목 : 성인 유해 매매 금지규정 알림

† 내 안에 머물러라

1. 관련 공문 : 중협주 제2022-385호(2022.5.24.)

성인의 유해 관련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알림

2. 최근 인터넷 거래 웹사이트에서 성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(추정) 판매를 시도하는 게시물에 올라온 사례가 있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주교회의 상임위원회(2022.5.13.)는 공문을 통해 성인의 유해를 판매하려는 일이 재발할 수 있다며 각 교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왔습니다.

※성인 유해 매매 금지규정

1. 교회법

제1190조 ① 거룩한 유해는 팔 수 없다.

② 중요한 유해와 기타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유해는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효하게 양도될 수도 없고 영구히 이전될 수도 없다.

2. 교황청 시성성 훈령

「교회의 유해: 진정성과 보존」

(*Le Reliquie nella Chiesa: Autenticità e Conservazione*)(2017년 12월 8일)

제25조 거룩하지 않은 장소나 인가되지 않은 장소의 유해 전시는 물론 유해의 판매(곧 유해의 물물교환이나 매매)와 거래(곧 가격을 고려한 유해의 소유권 양도)는 엄격하게 금지된다.

